

학원 교습비 (수강료) 게시

5月14日2018年

NO	교습과정	교습과목(반)	총교습시간 (00분/일, 주0회)	수강료 (교습비/분)	학원 교습비 (수강료) 명세 / 단위 : 원		
					수강료(교습비/월)	기타경비	계
1	국제화 (어학)	정회원 베이직 코스	800분 (100분/일, 주2회)	₩300	₩240,000	-	₩240,000
2	국제화 (어학)	비즈니스 회화	900분 (90분/일, 월10회)	₩600	₩540,000	-	₩540,000
3	국제화 (어학)	TSC 5~6급	720분 (90분/일, 주2회)	₩291	₩210,000	-	₩210,000
4	국제화 (어학)	CCTV 프리토킹	720분 (90분/일, 주2회)	₩333	₩240,000	-	₩240,000
5	국제화 (어학)	HSK 4급	1440분 (120분/일, 주2회)	₩180	₩260,000	-	₩260,000
6	국제화 (어학)	HSK 5급	1440분 (120분/일, 주2회)	₩180	₩260,000	-	₩260,000
7	국제화 (어학)	HSK 6급	1440분 (120분/일, 주2회)	₩180	₩260,000	-	₩260,00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에 따라 교습비 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5月14日2018年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주식회사 차이나다

교습비 등 반환 기준 게시

**[환불금 정산 기준]**

- ① 회원가입비는 모든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② 환불 시, 모든 할인 혜택이 취소되며 환불공제액은 정상 수강료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③ 제2조 2항에 따라 최초 교습 시작일은 계약서 상의 수강 기간 시작일로 지정합니다.
- ④ 계약 시작일 이전: 납입한 수강료 전액 환불
- ⑤ 계약 시작일 이후: 제 4조 1항의 환불 금액 기준 표를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1개월 기준)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수강횟수/기간에 따른 환불 내용	강의시작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의시작 후 7 일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에 해당하는 금액
	강의시작 후 14 일 수업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
	강의시작 후 14 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⑥ 총 납입한 수강료에서 환불신청일 기준 전 월까지의 누적 공제액 및 환불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공제 가능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하도록 합니다.

⑦ 누적 공제액이 총 납입한 수강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환불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⑧ 센터의 사정으로 강의가 중단된 경우, 수강료 등 반환기준 (법령 제 18조 3항 관련) - 제18조 2항 참고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합니다.

환불은 해당 수업을 등록한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회원은 해당 센터에 비치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전 해당 캠프에 문의하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로 인한 계약 종료일은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는 당일에 수강한 수업이 없었을 경우 전일까지로 규정합니다.

계약상의 패키지에 따른 강의를 모두 수강하거나 또는 패키지에서 정한 수강 개월 수가 경과된 경우 수강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제 3조에 따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강자에게 제공된 강의 프로그램 중, 탄탄한 중국어(정규 과정)을 제외한 터지는 중국어(회화 과정), 야놀자 중국어(소셜 특강)는 학습자의 회화 실력 향상 증진을 위해 서비스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구매한 패키지에 따라 차등 수강 횟수로 제공되며, **매월 프로그램별로 터지는 중국어와 야놀자 중국어를 월 4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강자의 수강만료일 기간까지 **이월이 가능하나, 해당 프로그램의 수강환불 신청은 불가합니다.**

프로모션 및 기타 사유로 추가된 할인, 무료수업 및 계약기간 등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일반 패키지를 제외한 기타 패키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로 배부되는 환불 규정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환불의 처리는 환불 상담 완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어학원 내부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 분납에 대한 환불 기준]**

- ① 수강료 분납 진행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환불이 일체 불가 합니다.
- ② 환불 시, 모든 할인 혜택이 취소되며 환불공제액은 정상 수강료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에 따라 교습비 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5月14日2018年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주식회사 차이나다